

LG에너지솔루션 제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개요 및 부의 안건

개요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커넥트홀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제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03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승인의 건	05
	제2-1호 의안 :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06
	제2-2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07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08
	제2-4호 의안 :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09
	제2-5호 의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10
	제2-6호 의안 : 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11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12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13
	※ '제4호' 의안은 제2-4호 의안 가결을 전제로 상정되며, 제2-4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자동 폐기됨.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7

※ 질의사항은 LG에너지솔루션 IR기획팀(02-3777-1114)으로 연락 바랍니다.

제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실적 주요 내용

- 2025년은 미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종료와 유럽의 CO₂ 규제 완화, 주요국의 관세 부과 등의 대외 환경이 전기차 수요 둔화 및 OEM사의 전동화 속도에 영향을 미친 한해였습니다. 이에 당사 매출은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한 약 2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고수익 제품 중심의 운영과 재료비율 개선, 북미에서의 ESS 생산 본격화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한 약 1.3조원(북미 생산보조금 포함)을 기록하였습니다.
- 한편, 2025년 별도기준 결손금은 전기 이월 결손금에 당기순손실 0.6조원을 포함하여 약 2.5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요약

(단위 : 십억 원)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YoY)	23,672 (-7.6%)	25,620 (-24.1%)	33,745 (+31.8%)
영업손익* (YoY)	1,346 (+134.1%)	575 (-73.4%)	2,163 (+78.2%)
당기순손익 (YoY)	81 (-76.1%)	339 (-79.3%)	1,638 (+110.0%)
* 북미 생산보조금 포함			
자산총계 (YoY)	67,148 (+11.4%)	60,307 (+32.7%)	45,437 (+18.6%)
부채총계 (YoY)	37,826 (+28.9%)	29,340 (+39.3%)	21,064 (+19.0%)
자본총계 (YoY)	29,322 (-5.3%)	30,967 (+27.0%)	24,374 (+18.4%)

별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 십억 원)

	2025년	2024년	2023년
매출액 (YoY)	7,662 (-3.3%)	7,927 (-35.5%)	12,288 (+16.1%)
영업손익 (YoY)	(1,280) (+44.5%)	(2,305) (-622.8%)	(319) (+52.9%)
당기순손익 (YoY)	(573) (+38.9%)	(938) (-1,327.4%)	(66) (+87.6%)
자산총계 (YoY)	31,168 (+12.8%)	27,641 (+17.4%)	23,546 (+1.5%)
부채총계 (YoY)	16,008 (+34.3%)	11,924 (+71.7%)	6,944 (+8.4%)
자본총계 (YoY)	15,160 (-3.5%)	15,717 (-5.3%)	16,601 (-1.1%)

제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고] 최근 3개년 감사의견

2024년	2023년	2022년
적정	적정	적정

[참고] 감사보고서 공시 일정 등

감사보고서 공시일정 : (국문) 2026년 3월 5일, (영문) 2026년 3월 5일

감사보고서 확인방법 :

구분	공시명/접근경로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감사보고서 제출
당사홈페이지	https://www.lgensol.com/kr/ IR>공시정보 IR>IR자료>감사보고서

배당 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민첩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2025년 별도 기준 결손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재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 당사는 현재 근본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 수요 변화를 고려한 Capa 운영 최적화, 경쟁 우위를 달성하고 직접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구조적인 원가 경쟁력 혁신을 통해 미래 잉여현금흐름 창출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배당 가능한 재원이 마련되는 시기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한 환원 정책을 경영 실적, 투자 계획,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확정 시 공시, 기업 설명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정관 개정안

· 당사는 금번 정관 개정을 통해 2025년 상법 개정 내용과 중간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구분	상법 개정 조항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상법 시행 시기	개정 예정 당사 정관
제2-1호	제542조의7	대규모 상장회사 ¹⁾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u>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u>	'26.9.10	제27조 제4항
제2-2호	제542조의14	일정규모 상장회사 ²⁾ 전자주주총회 도입	-	<u>병행형 전자주주총회 개최 의무화</u>	'27.1.1	제18조, 제24조
제2-3호	제542조의8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	<u>독립이사</u>	'26.7.23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제36조
제2-4호	제542조의12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최소 1인	최소 <u>2인</u>	'26.9.10	제36조
제2-5호	제542조의12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³⁾ 강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의결권 제한	사내/사외이사 모두 감사위원으로 선임 시 <u>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의결권 제한</u>	'26.7.23	제36조 제4항
제2-6호	-	중간배당 절차 개선	중간배당 기준일 7월 1일 0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가능	-	제45조

1) 대규모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2) 일정규모 상장회사: 상법 시행령 미발표로 정의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상장회사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3) 3% 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함.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정관 변경 배경 및 상세사항

개정 상법 반영

2025년 소수주주 보호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당사 정관에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2-1호.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27조 제4항(시행일 2026년 9월 10일)

- 현행법상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 2025년 9월 별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는 이사 선임 시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하여, 이사의 다양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에 당사 정관 내 반영되었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목적
제27조(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의 선임) ④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u>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진다.</u>	개정 상법에 따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 금지 반영
<신설>	<u>부칙</u> 제4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본 정관 제 27조 제4항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2호.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18조, 제24조(시행일 2027년 1월 1일)

- 그간 상장회사는 위임장 및 전자투표를 통해 사전 의사표시를 표시하거나,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금번 상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대규모 상장회사 예상)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 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온라인)으로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주주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당사는 정관을 개정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목적
제18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신설> ④ <신설>	제18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u>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u> ④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개최의무 및 의결권 대리행사 방법 변경 반영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18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3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제36조(시행일 2026년 7월 23일)

- 상장회사의 이사회 기능 강화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의 정관 내 해당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목적
제27조(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의 선임)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되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상법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반영
제29조(이사의 보선)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의 보선)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제31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 정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단, 감사위원회는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로 한다.	
<신설>	부칙 제3조(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6조(제3항은 제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4호.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36조(시행일 2026년 3월 20일)

- 현행법상 별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했습니다.
- 금번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최소 2명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6년 9월 10일부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바,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변경하고 1명을 추가 분리선출하여, 분리선출한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목적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3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개정 상법에 따른 분리선출 감사위원 인원 증원 반영</p>
<p><신설></p>	<p><u>부칙</u>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2-5호.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36조 제4항 (시행일 2026년 7월 23일)

- 현행법상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에서 감사위원 선·해임 시 발행 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해임하고자 하는 경우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해임하는 경우에는 3%의 제한 의결권에 최대주주 지분에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지 않고 3%를 초과한 의결권만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6년 7월 23일부터는 사내이사 뿐 아니라 사외이사 모두에, 최대주주는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의 정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변경안	변경 목적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u>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u>)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관련 조항 반영
<신설>	부칙 제3조(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1조의2 및 <u>제36조(제3항은 제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u>	개정 상법 시행일을 정관 시행일로 설정

정관 변경 승인의 건

배당 절차 개선 반영

· 2023년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6호. 배당절차 개선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 정관 제45조(시행일 2026년 3월 20일)

· 당사는 2024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기말'로 지정되어 있던 기존 배당기준일을 '배당금액 확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바 있습니다.

· 금번에, 기말 배당 뿐 아니라, 중간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절차를 추가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및 주주들이 배당 관련된 사항을 먼저 확인한 후 투자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행	변경안	변경 목적
제45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5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u>이사회의 결의로 관련 법령에 따라</u>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u>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u> ② <u>이사회는 전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 ③ <u>중간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④ (현행과 같음)	중간배당의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 이명규 선임의 건



생년월일	1974.10.13
추천인	(주)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임기	3년(2029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신규 선임 여부	신규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없음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주요 경력

2018 ~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2014 ~ 2018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부교수
 2010 ~ 2014 포항공과대학교 친환경소재대학원 부교수
 2007 ~ 2010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선임연구원

학력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대학원 박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 학사

후보 추천 사유

- 이명규 후보자는 포항공대 및 고려대학교 조교수·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으로, 고분자 및 재료 과학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기술 격차 확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사도 Winning Tech 확보를 위한 R&D에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가 보유한 소재 관련 전문성과 통찰력이 배터리 소재 개발 등 당사의 주요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와 같이 당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생년월일	1966.04.10
	추천인	(주)LG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임기	3년(2029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신규 선임 여부	재선임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없음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주요 경력

2024 ~ 현재 롯데이노베이트(주) 사외이사
 2022 ~ 현재 고려대 기업산학협력센터 특임교수
 2020 ~ 2022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18 ~ 202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통상비서관
 2017 ~ 2018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英 버밍엄대학교 국제경제학 석사
 英 버밍엄대학교 경제학 박사

후보 추천 사유

- 박진규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통상 및 무역 분야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통상비서관 등 주요 공직을 역임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 및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당사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후보자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영위 및 내부통제 등 리스크를 예방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재선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진규 선임의 건

표1. 박진규 후보자의 최근 3년 임기 내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 내역

구분	직책	참석율(출석/개최)			누적
		2025년	2024년	2023년	
이사회	이사	100% (7/7)	100% (8/8)	100% (7/7)	100% (22/22)
감사위원회	위원	100% (5/5)	100% (4/4)	-	100% (9/9)
ESG위원회	위원	100% (2/2)	100% (3/3)	100% (2/2)	100% (7/7)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	100% (2/2)	100% (1/1)	100% (3/3)

* 상기 개최 및 출석 횟수는 후보자가 당사 이사(2023.3.24) 및 감사위원회 위원(2024.3.25)으로 선임된 이후로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만 반영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에 사임하였음

감사위원회 위원 이명규 선임의 건

후보 소개

- 본 후보자의 약력은 상기 [제 3호 의안]의 후보소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추천 사유(이사회 추천)

- 이명규 감사위원 후보자는 재료공학 관련 다년간의 연구경험을 통해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도를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의 특성 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후보자가 주요 의사 결정 시 당사의 내부통제 및 감시 장치 점검 등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 없음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없음

이사회 구성 현황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 2인의 이사를 선임(신규선임 1인, 재선임 1인)할 예정으로, 선임 후의 이사회 구성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6기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구성

성명	구분	재임기간 (회계연도기준)	성별	전문분야	
김동명	사내이사	2년	남	기업경영(일반)	
이창실	사내이사	6년	남	기업경영(재무)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4년	남	기업경영(일반)	여성이사 비율
한승수	사외이사	5년	남	회계	14% (1명 / 7명)
여미숙	사외이사	5년	여	법률	
박진규	사외이사	3년	남	산업통상	사외이사 비율
이명규	사외이사	0년	남	이차전지산업	57% (4명 / 7명)

* 상기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지표(Board Skill Matrix)는 당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함.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2025년 말 기준)

구분	의장/위원장	구성원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이사회	권봉석(기타)	김동명, 이창실	한승수, 여미숙, 신미남, 박진규
감사위원회	한승수(사외)	-	신미남, 여미숙, 박진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여미숙(사외)	권봉석	한승수
ESG위원회	신미남(사외)	김동명	여미숙, 한승수, 박진규
내부거래위원회	여미숙(사외)	이창실	신미남, 한승수
경영위원회	김동명(사내)	이창실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기 이사보수 한도(案)

· 당사 이사보수 한도는 사내이사의 고정 연봉(연봉, 역할급)과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 기타 복리후생, 사외이사의 고정연봉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보수 산정 기준

구분	산정 기준
사내이사	연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 난이도, 생산성 등 역할급 : 직무/직책, 전략적 중요도, 사업 경쟁강도, 사업 규모 등 성과 인센티브 : 계량지표(매출/이익 목표달성도 등의 재무 성과) 비계량지표(전략 과제, 중장기 이행평가 등의 미래준비 등)
사외이사	연봉 : 물가상승률 사업환경, 책임의 범위와 경영 난이도 등

※ 상기 기준 항목의 상세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내 임원 보수 규정에 따름

※ 성과 인센티브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감안하여 산정(연봉의 0-150% 수준 내)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함

※ 당사는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이사보수 한도 및 지급 실적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당사 이사보수 한도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여유를 확보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거쳐 한도가 결정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작년 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이사의 직급 및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이사보수 한도를 선제적으로 25% 하향한 바 있으나, 경영 성과 지표의 미달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률이 50%를 밑돌았습니다.
- 그럼에도 금년에는 올해 목표하는 경영실적 개선 시 예상되는 성과급 지급을 감안하여 현재의 이사보수 한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제7기 이사보수 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60억 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 2025년 경영실적에 대한 성과급은 제7기(2026년) 지급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

제7기(2026년) 이사보수 한도(案)

구분	제7기(2026년)
이사의 수(사외이사 수)	7명(4명)
이사보수 한도	60억 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기 이사보수 지급실적

- 직전 정기주주총회에서 제6기(2025년) 이사 보수한도는 2025년 예상되는 등기이사의 직급 구성 변화, 수요 변동성이 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년의 80억 원 대비 25% 축소한 60억 원으로 책정하여 승인 받았습니다.

제6기 이사 보수 지급 내역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한도 금액	실지급 금액	지급 비율
7명(4명)	60억	26억	43%

* 기타비상무이사 1인은 보수지급액 없음

- 제6기 이사 보수 집행금액은 총 26억 원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이사 보수한도의 43%가 지급되었습니다. 2025년 실지급액에는 2024년 경영실적 목표의 미달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에 지급된 급여만 포함되었습니다.
- 당사는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실제 보수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해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연간 집행 내역은 금년 3월 12일 공시 예정인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최근 3개년 주주총회 승인 보수한도 및 집행금액

구분	제6기(2025년)	제5기(2024년)	제4기(2023년)
한도 금액	60억	80억	80억
실지급금액(지급비율)	26억(43%)	51억(64%)	60억(75%)

- 최근 3년 동안 당사는 보수한도 대비 평균 61% 수준에서 이사보수를 집행하였습니다.
- 2023년과 2024년 지급 실적에는 전년의 경영실적과 성과에 따른 사내이사의 성과급이 포함되었으며, 2024년에는 前사내이사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지급된 보수도 포함되었습니다.
- 당사는 매년 이사의 직급, 경영환경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보수 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실지급금액이 아닙니다. 향후 성과 개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여유를 두고 운영하는 만큼, 실제 집행되는 보수도 임원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철저한 검토 후에 확정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